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8일, 김소희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2.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5. 2.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소희의원)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생산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시 우선 활용하게 하고, 기상청장이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현행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여야 함.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책 마련 시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그 활용 현황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개정안은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용 의무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책에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표준시나리오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입법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대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실태조사 명칭을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